

일 시	회 의 구 분	부 의 안 전	비 고
12월21일 (목) 11:00	제4차 본회의	1. 안전 처리 2. 2007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예산(안) 의결 등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

2006. 11. 2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2006. 11. 27)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창신1,2,3동 및 송인1동 일대 노후불량주택 밀집,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동일 생활권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기능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가 입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1) 지 구 명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1,2,3동 및 송인제1동 일대
- 3) 면 적 : 846,100㎡

4) 지정목적

-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통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교통계획 수립등으로 도시환경 열악 지역에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 도심지상에 부합되는 상업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업·업무 및 주거가 공존하는 동일한 생활권역별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랫동안 낙후지역에 대하여 균형된 도시발전과 주변여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5) 재정비촉진지구 유형 : 주거지형 + 중심지형

6) 시행자 : 자치구, 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조합)등

7) 시행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4. 意 見 採 擇

-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신·송인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신청하려는 것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이해관계인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강구토록 함.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의견채택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채택대로 가결함)